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3일, 광규택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6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3)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24.) 상정/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7.25.) 상정/심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8.25.) 상정/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1.20.) 상정/심사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1.21.) 상정/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2.3.) 상정/심사

제1차 전체회의(2026.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
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곽규택의원)

글로벌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여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특히,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국내 해양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적해 있는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외적으로 동북아의 항만 허브 부산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해사법원의 설치를 전제로 해사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 및 그 구체적인 설치 형태에 관한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